
환경영향평가 등
질의회신 사례집

[Ⅲ. 소규모환경영향평가]

2017. 11.



금강유역환경청

1-15. 운영중인 부지 내에서 동종의 공장 증축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질의내용】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최초승인('88.6.9, 계획관리지역)을 받아 운영 중 금회 기 승인 받은 부지내에서 같은 업종의 공장동을 증축 및 소음진동배출 시설 변경신고 인허가를 득하고자 함

'88.6.9(최초 승인)	'94.6.4 (대지·건축면적 증가)	'09.9.7 (도로분할)	'17.8.31 (금회 인허가 신청)
대지면적 6,462㎡ (건축면적 597㎡)	대지면적 13,777㎡ (건축면적 2,592㎡)	대지면적 12,699㎡ (건축면적 2,411㎡)	대지면적 12,699㎡ (건축면적 3,856㎡ 증 1,444㎡)

- (질의) 기 승인받은 부지의 변경 없이 같은 업종의 공장 동만 증축하는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12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는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기존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구(舊) 사전환경성검토(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로써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고, 금번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면적(또는 대지면적)이 1,444㎡ 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1-20. 법 개정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도시계획시설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동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였고, 2015년 8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5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세부조성계획 포함) 결정·고시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당 여부
- * 종전 규정에 따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님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개정 전 (2016.11.29.)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실시계획 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